

해양심층수의 수질 기준(제22조제1항 관련)

1. 해양심층수의 수질 기준은 아래와 같다.

가. 취수해역의 수온은 연중 섭씨 3.0도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입하는 해양심층수 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기준에 따른다.

나. 염분은 연중 33.8~34.2 피에스유(psu)로서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
다. 나트륨(Na), 마그네슘(Mg), 칼슘(Ca) 및 칼륨(K) 원소는 각각 27.8(Na) : 3.3(Mg) : 1.1(Ca) : 1(K)의 일정성분비를 유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일정성분비의 허용오차 범위는 ±10퍼센트로 한다.

라. 영양염류의 수질기준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.

구분	질산성질소	인산염	규산염	질소/인 비율
단위	mg/L	mg/L	mg/L	농도비(ppm비)
기준	0.13 이상 0.36 이하	0.02 이상 0.07 이하	0.25 이상 2.4 이하	4.5 이상 6.5 이하

마. 청정성 확보를 위한 일반물질, 미생물, 유해영양물질 및 방사능의 허용기준은 아래와 같다.

구분	일반물질	미생물	유해영양물질				방사능		
	수소이온 농도	대장 균군	카드뮴 (Cd)	납 (Pb)	구리 (Cu)	수은 (Hg)	세슘 (¹³⁷ Cs)	스트론튬 (⁹⁰ Sr)	삼중수소 (³ H)
단위		MPN/ 250ml	mg/L	mg/L	mg/L	mg/L	mBq/L	mBq/L	Bq/L
기준	8.1 이하	검출 안됨	0.001 이하	0.005 이하	0.1 이하	0.001 이하	4.0 이하	3.0 이하	6.0 이하

2. 해양심층수 수질검사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.



